

 		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12. 5.(목) 배포</p>	
보도일	<p>2019. 12. 6.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2. 5.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</p>		
담당과	교육국제화담당관	담당자	과 장 신미경 (☎ 044-203-6771) 사무관 구현규 (☎ 044-203-6779)

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(안) 발표

- ◆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
- ◆ 입학·선발부터 학업·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
- 입학·선발 지표 신설, 언어능력 기준 강화
- ◆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사증발급기준 강화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)는 12월 6일(금)에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('20~'23)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(이하 '인증제') 기본계획(안)을 발표하였다.

○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*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·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,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,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.

*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제외

○ 교육부는 현재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,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하여,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.

○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,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*되었으며,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**하고 있다.

* 언어능력: (2012) 22.74% → (2018) 44.15%, 의료보험 가입률: (2012) 73.69% → (2018) 85.99%

** 외국인 유학생 현황: (2012년) 86,878명 → (2018년) 142,205명
 어학연수생 현황: (2012년) 16,639명 → (2018년) 44,756명

- 다만,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,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,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보완하였다.

□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.

【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】

- 3주기 인증제에서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다.
 - ※ 다만,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 가능
-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·강화하였으며, 어학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하여 체계화된 평가체제를 구축하였다.

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(‘20~’23)

학위과정		
분야	세부 지표	
기본요건	불법체류율	
평가영역	전략 및 선발	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(조직·예산)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의료보험 가입률
	유학생 관리	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학업·생활 지원 유학생 상담률
	성과	중도탈락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신입/재학)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

어학연수과정		
분야	세부 지표	
기본요건	불법체류율	
평가영역	전략 및 인프라	사업계획 및 인프라(조직·예산) 의료보험 가입률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
	어학연수생 지원 관리	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입학·수료관리의 적절성

-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1.5~2.5% 미만*, 어학연수과정 8~10% 미만**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.

* (100명 미만) 2.5% 미만, (100~1,000명) 2% 미만, (1,000명 초과) 1.5% 미만

** (100명 미만) 10% 미만, (100~500명) 9% 미만, (500명 초과) 8% 미만

【 입학·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 강화 】

-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·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하고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, 학업·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화 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.

- 2주기 인증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정 심사 시 선발절차 공시 여부, 면접 실시여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3주기 인증제에서는 입학계획 수립여부, 입학공시 및 입학전형의 적절성,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.

- 또한, 3주기 인증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 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 하며,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.

2주기 언어능력 기준	3주기 언어능력 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학생 30%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학생 40% 이상 • 신입생 30% 이상 • 졸업 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



* 현재 대학은 공인언어능력이 없더라도 자체 언어능력 시험 결과나 어학 연수기관 수료 여부를 활용하여 유학생 입학 허용

- 그리고,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육, 학습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·생활 지원노력과 이를 위한 조직·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심사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.

【 인증방식 변경 】

-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,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*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하여 사증발급 절차 대폭 완화**,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·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.

*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전체 평가항목 중 90% 이상 통과 등의 요건 충족 필요(통합 불법체류율 2% 미만 필수)

** 소속 학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4년의 체류기간 부여 등(관계부처 협의 중)

-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,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탈락된다.

【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 강화 】

-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,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의 유무를 심사하여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·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·사업에서 배제한다.

< 비자심사 강화대학 심사기준 >

영역	학위과정		어학연수과정	
	지표	심사기준	지표	심사기준
기본요건	불법체류율	5% 이상	불법체류율	20% 이상
핵심지표	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	60% 미만	학급당 어학연수생 수	30명 이상
	의료보험 가입률	80% 미만	의료보험 가입률	80% 미만
	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재학)	10% 미만	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	80% 미만
	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신입)	10% 미만		

※ 최종 심사기준은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에서 결정

- 또한,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

화*하였으며,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
을 희망하는 경우 재정입증 특례**가 적용된다.

* TOPIK 4급 이상(전문대는 TOPIK 3급 이상)

** 사증 발급 시 증명해야하는 은행잔고 \$10,000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여
원만히 수학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 단위로 \$5,000씩 인출 가능

○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
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부실
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.

□ 교육부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
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
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.

[참고] 1.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주요 변경사항

2.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변화

3.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과정별 인증기준



참고 1

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주요 변경사항

	현행 (2주기)	개선 (3주기)
평가체계	①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통합평가 ② 핵심지표(정량) 중심 평가 - 불법체류율, 중도탈락률, 등록금 부담률, 언어능력 등 6개 지표	①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분리평가 (어학연수과정 독립평가 첫 시행) ② 각 과정별 특성에 맞는 유학생 유치·관리역량 종합 평가 - 전략 및 선발, 유학생 관리, 성과 등 영역별 평가 ※ 학위과정 10개, 어학연수과정 7개 지표
평가지표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학위과정 ></p> ① 유학생 입학과정 일부 심사 - 공시여부, 면접여부 등 확인 ② 최소한의 언어능력 심사 - 재학생의 30% 이상이 공인 언어능력 보유 ③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성심사 - 유학생 학습지원 여부, 한국어교육 현황 등을 정성으로만 심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학위과정 ></p> ① 유학생 입학·선발 지표 항목 신설 - 입학 공시절차, 입학기준, 입학사정 등 선발과정 종합심사 ② 언어능력 기준 강화 - 신입생/재학생의 30%/40% 이상이 공인 언어능력 보유 -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포함여부 평가 ③ 유학생 지원·관리 기준 강화 - 유학생 상담률, 만족도 관리 등을 정량 정성으로 심사 - 국내학생 국제화역량 지원현황 평가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어학연수과정 ></p> ① 학위과정과 통합하여 일부분 심사 ② 불법체류율, 의료보험 가입률 위주로 심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어학연수과정 ></p> ① 어학연수과정 별도 심사 ② 불법체류율을 포함, 전략 및 인프라, 어학연수생 지원·관리 등 종합 심사 - 어학연수 사업계획 - 입학·수료 관리의 적절성 - 교육여건 개선(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등)
	① 인증기간 3년 ②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통합인증 ③ 인증/미인증으로 구분 - 인증대학에 혜택 부여	① 인증기간 4년 (주기 내 유효) ②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분리인증 ③ 인증대학 중 우수 인증대학 지정 - 인증대학에 비해 혜택 확대

참고 2

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변화

< 2주기 vs. 3주기 평가체계 비교 >

2주기		3주기	
구분	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(통합운영)	구분	학위과정(별도운영)
필수 지표	불법체류율	기본 조건	불법체류율*
	중도탈락률		
핵심 여건 지표	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	전략 및 선발	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(조직·예산)
	의료보험 가입률		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
	언어능력(한국어/영어)		의료보험 가입률**
	신입생 기숙사 제공률	유학생 관리	유학생 등록금 부담률
국제화 지원 지표 (정성)	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		유학생 학업·생활 지원
	외국인 유학생 생활적응 지원		유학생 상담률
	외국인 유학생 학습지원	중도탈락률	
외국인 유학생 교육성과	성과	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신입/재학)	
			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
		구분	어학연수과정(별도운영)
		기본 조건	불법체류율*
		전략 및 인프라	사업계획 및 인프라(조직·예산)
			의료보험 가입률**
			학급당 어학연수생 수
		어학 연수생 지원 관리	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
			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
			입학·수료관리의 적절성

* 3주기 내에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

*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지표 변경 또는 삭제 가능

※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,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※ 인증 유지여부는 정량지표 중심으로 매년 심사(음영 처리)

참고 3

3주기 교육국제화 인증제 과정별 인증기준

< 학위과정 인증기준 >

분야	세부 지표	심사기준	신규지표 여부	인증기준	
기본요건	불법체류율	1.5~2.5미만*	기존	총족 필수**	
평가역	전략 및 선발	1. 국제화사업계획 및 인프라(조직예산)	정성	강화	3개 중 2개 이상 총족
		2.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	정성	강화	
		3. 의료보험 가입률***	95% 이상	기존	
	유학생 관리	1.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	80% 이상	기존	3개 중 2개 이상 총족
		2. 외국인 유학생 학업·생활 지원	정성	기존	
		3.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	60% 이상	강화	
	성과	1. 중도탈락률	6% 미만	기존	3개 중 2개 이상 총족
		2.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신입/재학)	30%/40% 이상	강화	
		3.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	1건 이상/정성	강화	

* (100명 미만) 2.5% 미만, (100~1,000명) 2% 미만, (1,000명 초과) 1.5% 미만
 다만, 전문대학은 구간별 기준에 1%p 추가

* 3주기 내에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

** 다만, 중도탈락률 기준 충족하는 경우 불법체류율 4% 미만 가능

**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지표 변경 또는 삭제 가능

※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,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< 어학연수과정 인증기준 >

분야	세부 지표	심사기준	인증기준
기본요건	불법체류율	8~10% 미만*	총족 필수**
전략 및 인프라	1.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	정량/정성	3개 중 2개 이상 총족
	2.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	90% 이상	
	3.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	20명 미만	
어학연수생 관리	1.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	80% 이상	3개 중 2개 이상 총족
	2. 의료보험 가입률***	95% 이상	
	3. 입학·수료관리의 적절성	정성	

* (100명 미만) 10% 미만, (100~500명) 9% 미만, (500명 초과) 8% 미만

** 다만,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기준 충족한 대학은 불법체류율 15% 미만 기준 적용하되, 3주기 내에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